



국민건강보험공단



수신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장
(경유)

제목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의 금지사항 및 위반 시 처분내용 안내

1. 보수교육을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2. 최근 일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에서 교육과 무관한 건강보조식품 홍보 및 판매 유도 등 보수교육실시기관 **금지사항 위반(상업적 내용 전파)**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 하였습니다.
3.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역량 향상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공적 교육으로 교육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교육기관에서는 **금지사항(상업적 내용 전파, 미지정 강사 교육, 교육비 할인 금지)** 을 준수하여 보수교육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(금지사항 주요사례)

- 상업적 내용 전파 (보험·금융상품, 건강식품 등 홍보 및 식사류, 선물 제공 포함)
- 지정받지 않은 강사 교육 (○○전문교육원, ○○건강, ○○은행 등 심폐소생술 무료 교육 등)
- 교육비 할인 (식사류 제공, 화장품 제공 포함) 등

※ (참고)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(2025) II. 보수교육실시기관 및 관리기관 /

1. 보수교육실시기관 / 마. 보수교육실시기관 금지사항

< 금지사항 위반 시 처분내용 >

- 공단은 교육기관이 **운영 지침(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등) 위반 시 1차 '시정권고', 2차 '시정명령'**을 해당 실시기관에 통보
- 당해 연도 시정권고 4회 이상 또는 시정명령 2회 이상 위반 시 기관 지정 취소 및 다음 지정 시 신청 불가
 - *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권고 없이 지정취소 할 수 있으며, 보수교육 실시기관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함

끝.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


대리

박영우

팀장

진은상

부장

엄재훈

1/22

협조자

시행 종사자관리부-111 (2026.1.22.) 접수

()

우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, 23층(반곡동)

/ <http://www.nhis.or.kr>

전화 033-736-1941

전송 033-749-6374 / 210727@nhis.or.kr

/ 공개